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84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방법을 개선·보완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운영 규정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쉽게 개정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댐건설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대형 댐의 주변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수별(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금액을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의

계산식을 조정(안 별표 7 제1호가목 1), 2), 라목)

나. 탄소중립 이행 촉진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

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별표 6)

다. “탄소중립”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

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의2 신설)

라.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

어를 쉽고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대체(안 제15조제7호, 별표 9 제6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제45조의2를 제45조의3으로 하고,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교부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나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무공해충전소·공동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폐기물 회수시설(폐기물 거점 수거시설 포함)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등 탄소중립형 사업

별표 6 제1호다목1) 중 “설치사업”을 “설치사업 또는 생태복원 및 조성

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중 “아동급식비 지원 등”을 “아동급식비 지원, 환경·생태 교육지원 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2) 중 “설치사업”을 “설치사업과 그 시설을 활용한 녹색생활 실천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사업”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억원)

기 초 지원금	발전 계수 금액		용수공급 계수 금액		저수용량 계수 금액	
	연간 발전 용량 (GWh)	금액	용수공급 능력 (억 m ³ /년)	금액	총저수용량 (억 m ³)	금액
2.5	800 초과	6.0	20 초과	6.0	25 초과	6.0
	550 초과 800 이하	4.0	15 초과 20 이하	4.0	20 초과 25 이하	4.0
	350 초과 550 이하	3.0	10 초과 15 이하	3.0	15 초과 20 이하	3.0
	200 초과 350 이하	2.0	5 초과 10 이하	2.0	10 초과 15 이하	2.0
	40 초과 200 이하	1.5	1 초과 5 이하	1.5	5 초과 10 이하	1.5
	5 초과 40 이하	1.2	0.5 초과 1 이하	1.2	0.5 초과 5 이하	1.2
	5 이하	0.9	0.5 이하	0.9	0.5 이하	0.9

별표 7 제1호가목2) 표 외의 부분 중 “0.9”를 “0.85”로 하고, 같은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억원)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추가지원금	조정금액
<u>10 초과 30 이하</u>	<u>10+10 초과액×0.90</u>
<u>30 초과 70 이하</u>	<u>28+30 초과액×0.85</u>
<u>70 초과 100 이하</u>	<u>62+70 초과액×0.80</u>
<u>100 초과</u>	<u>86+100 초과액×0.75</u>

별표 7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지원금이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원금보다 적은 댐에 대해서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그 밖의 지원사업비로 지원금 감소분을 보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기준이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21. 6. 15. 시행) 제44조에 따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1. 시행) 별표7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별표 9 제6호 중 “굴착·성토·점토”를 “굴착(땅파기)·성토(흙쌓기)·절토(땅깎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호, 제45조의2 및 별표 9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 6. (생략) 7. <u>공동구(共同溝)</u> 8. ~ 10. (생략) <u><신설></u>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설치 시설물을 말한다)</u> 8. ~ 10. (현행과 같음) <u>제45조의2(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 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법 제44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과 관련하여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금의 신청·교부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u> <u>제45조의3 (현행 제45조의2와 같음)</u>
<u>제45조의2 (생략)</u>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621